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근거 마련 등〉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4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등 평가 근거 마련	3
2. 물관리위원회의 안건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6
3.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신설	11
※ 참고자료	14
1. 물관리위원회 개요	14
2.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15
3. 국가·유역 물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대상 물관련 계획	17
4. 부합성 심의절차	18
5. 유사 입법례(대통령 소속 위원회)	19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3일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지난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아울러 지자체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역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7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등 평가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상황 평가”라 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및 기준 2. 평가 대상 3. 평가 방법 4. 평가 일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

현행	개정안
	<u>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④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은 수량·수질·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략계획임.

현행법 제27조제1항¹⁾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계획에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²⁾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계획 수립, 평가 결과 반영 등 평가 절차에 관한 대강의 내용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행상황 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국가계획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②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이행상황 평가 내용을 반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며, ③ 평가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조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계획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2.물관리위원회의 안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에 관한 규정³⁾을 법률로 상향하고, 안전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안전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부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물관리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u> <u>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u> <u>나. 국가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u> <u>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u> <u>라.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5인 이상</u> <u>2.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중</u>

3)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국가물관리위원회 훈령 제2호, 2020.5.25. 시행)에 규정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u>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u> 나. <u>유역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u> 다. <u>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u> 라. <u>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5인 이상</u> ⑥ <u>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u> ⑦ <u>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사건 검토 결과 회의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⑤·⑥ (생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안건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 제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⑨·⑩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물관리 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물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 자격(제21조)⁴⁾, 기능(제22조)⁵⁾, 임기(제25조)⁶⁾, 회의(제26조)⁷⁾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운영, 회의, 안건 논의

4) 「물관리기본법」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하 생략)

5)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하 생략)

6) 「물관리기본법」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국가물관리위원회 훈령 제2호, 시행 2020.5.25.)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는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⁸⁾, 현행법에는 안건 제출 및 상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안건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②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안 제2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안건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7) 「물관리기본법」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가위에 따르면 2021년 6월 11일에 국가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7월 14일에 민간 유역위원장이 국가위에 유역계획안을 제출하고 부합성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의 임기 종료(국가위는 2022.7.30., 유역위는 2022.8.25.)가 임박하였고 유역계획안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해당 계획안은 상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안전 제출·상정 절차 등은 물관리위원회의 실무적인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므로 유사입법례⁹⁾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 및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⁰⁾.

[표] 현행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안전제출자 규정

- 제7조(안전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4.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5인 이상
- ② 다음 각 호의 위원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
1.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4.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5인 이상
- ③ 제출된 안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출된 안전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안전을 선정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9)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안전제출·안전의 사전검토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운영세칙/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음.(참고자료 5. 유사입법례 참조)

10)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신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현행법 제30조¹¹⁾는 지자체장이 물관리 관련 계획¹²⁾을 수립하거나

- 11) 「물관리기본법」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위”라 함)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역위는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역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유역위의 계획 조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유역위의 계획 조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¹³⁾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역위 계획 조정 요구의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자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계획과의 연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 레인 「폐기물관리법」¹⁴⁾ 및 「물환경보전법」¹⁵⁾에

12) 「물관리기본법」 제3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은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으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있음.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2 및 참고자료3 참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등

1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5) 「물환경보전법」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 등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삭감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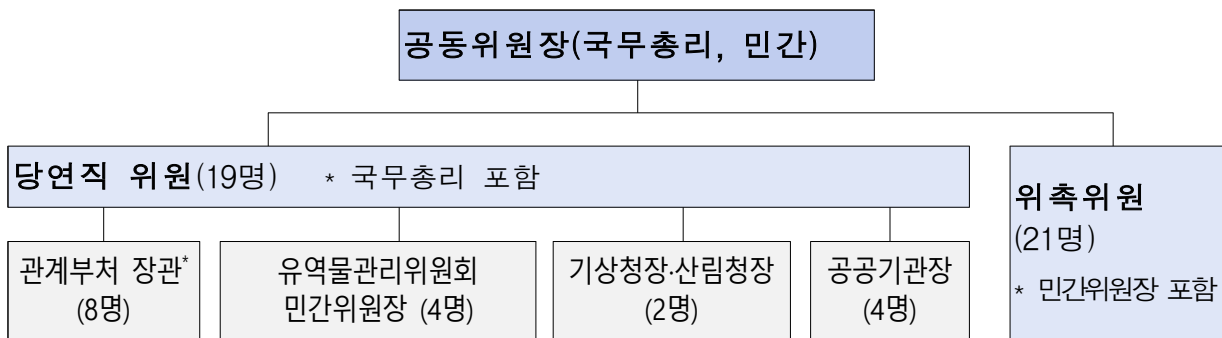
02)6788-5547

※ 참고자료 1: 물관리위원회 개요

□ (구성) 「물관리기본법」 (‘19.6.12. 시행) 제20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 (국가위)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포함 **40명**(당연직 19명 포함)

- 위촉위원(민간위원장 포함)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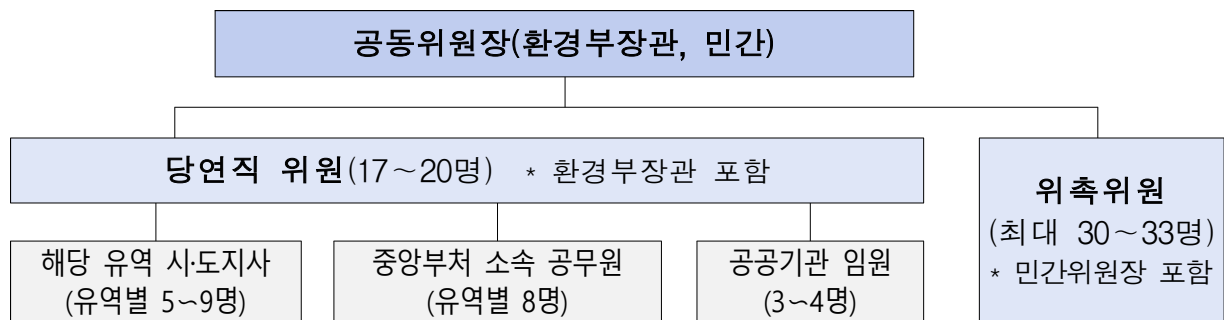


* 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유역위) 4개 유역위별로 공동위원장 2명(환경부장관, 민간) 포함 **36~43명**

- 위촉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국가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단, 유역위 민간위원장은 국가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2기 87명(한강 24, 낙동강 22, 금강 22, 영·섬강 19) // (당연+위촉위원)
한강 43명(당연19+위촉24), 낙동강 42명(20+22), 금강 41명(19+22), 영·섬 36명(17+19)

□ (기능)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 물분쟁 조정, 물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참고자료 2: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국가물관리위원회(제2기)

□ 구성현황

당 연 직 (19명)	▶ (1)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8)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2)기상청장, 산림청장 ▶ (4)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농어촌공사 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 (4)유역물관리위원장(한강 전경수, 낙동강 남광희, 금강 김건하, 영섬 김민환)
민간위촉 (21)	▶ (1)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 (공동위원장) ▶ (4)이주현(간사), 한건연(정책분과장), 공동수(계획분과장), 박종미(물분쟁조정분과장) ▶ (16)김영주((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등 민간위원 16인

○ 위촉직 민간위원

연번	성명	소속	분야	계획 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정책 분과	비고
계	21			11	11	12	
1	배덕효	세종대 총장	수자원	-	-	-	위원장
2	공동수	경기대 바이오융합학부 교수	물환경	●		○	분과장
3	김영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환경단체		○	○	
4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수자원	○	○		
5	박경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치수·방재			○	
6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상하수도	○			
7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중앙회장	농민단체	○	○		
8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법	○	●		분과장
9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상하수도		○	○	
10	백규석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법조계		○	○	
11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하수	○	○		
12	이주현	중부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수자원	○		○	간사
13	이태관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	물환경			○	
14	이호식	한국교통대 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교수	상하수도	○	○		
15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자원		○	○	
16	정건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치수·방재	○		○	
17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	물환경			○	
18	최문진	(주)부강테크 경영총괄대표	물산업			○	
19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물순환	○			
20	최진용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농업·산림	○	○		
21	한건연	경북대 방재연구소 교수	수자원		○	●	분과장

유역물관리위원회(제2기)

□ 구성현황

구 분		유역위원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합 계		43	42	41	36		
당연직 위원	당연직 계	19	20	19	17		
	당연직위원장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소계	7	9	8	5	
		유역내 관계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부처	소계	7	7	7	7
			유역환경청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방환경청장	원주	대구	전북	전북
			홍수통제소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환경연구소장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소속공무원 공공기관장 추천	농림부장관 추천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산림청장 추천	북부지방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기상청장 추천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추천	소계	4	3	3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충남지역본부장	전남지역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낙동강유역본부장	금강유역본부장	영·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충청권환경본부장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	-	한강수력본부장	
위촉직 민간위원	위촉직 계	24	22	22	19		
	위원장	1	1	1	1		
	위원	23	21	21	18		

※ 참고자료 3: 국가·유역 물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대상 물 관련 계획

□ (국가위) 유역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 부합 여부 심의(17종 58건)

연번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연번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4)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0	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청장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4)	환경부장관	11	국가수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3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환경부장관
4	댐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5)*	환경부장관
5	물재이용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4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6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5	찬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환경부장관
7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4)	유역환경청장	16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8	수생태계복원계획***	환경부장관	17	유역하수도정비계획(29)**	유역환경청장
9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환경부장관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 한강(9), 낙동강(8), 금강(6), 영산강(3), 섬진강(3)

*** 지방자치단체 수립계획 제외(유역위 심의대상)

□ (유역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14종 1,246건)

연번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3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실행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물재이용관리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5	수생태계복원계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환경부장관 수립계획 제외)
6	지역사방사업계획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 수립계획 제외)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8	소하천정비중기계획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9	수도정비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0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시·도지사
11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2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시·도지사
13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시·도지사
1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참고자료 4: 부합성 심의 절차

절 차	주 체	소요기간 (누적)
부합성 심의 컨설팅(권고)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
↓	↓	↓
① 부합성 심의 요청서 제출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
↓ 요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①-1 부합성 심의 요청서 보완 요청	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계획수립권자	-
↓	↓	↓
② 부합성 심의 추진 계획 보고	물관리위원회지원단 → 물관리위원회	접수 후 즉시
↓	↓	↓
③ 예비 검토 보고서 작성	물관리위원회지원단	20일 (20일)
↓	↓	↓
④ 심의 안건 작성 및 사전 검토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30일 (50일)
↓	↓	↓
⑤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 부합함 의결 시 : 절차 종료 * 부합하지 아니함 의결 시 : 계획 조정 요구	물관리위원회	10일 (60일)
↓ 계획 조정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	↓
⑤-1 결과 조정 요청 및 재심의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20일 (80일)
↓	↓	↓
⑥ 조치 결과 제출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10일 (90일)

※ 참고자료 5: 유사 입법례(대통령 소속 위원회)

위원회명 (법률명)		조항 및 내용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 세칙	제3조(안건의 제출) 안건은 환경부장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법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운영 세칙	제4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연합체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명 (법률명)		조항 및 내용
		필요할 경우 법 제64조제9항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법 제64조제10항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⑤ <u>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u>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
	운영세칙	<u>제3조(안건의 제출)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u>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u>분과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u>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u>자문단 또는 기획단으로 하여금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u>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탄소중립 기본법)	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시행령	-
	운영세칙	제1조~제14조(주요내용) <u>위원의 윤리의무, 비밀 유지, 회의(서면의결, 대리출석 등), 위원장 직무대행, 분과위·특별위·총괄기획위·전문위 구성 등</u> 제15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u>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u>